

STATE HUMAN RIGHTS LAW)은 나이, 신념,  
, 출신 국가, 혼인 상태, 장애, 군복무  
류, 가족 상태 및 유전적 소인을 이유로,  
설 공간, 의용 소방 활동, 비종파적 교육  
금지하고 있습니다.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WWW.DHR.NY.GOV](http://WWW.DHR.NY.GOV)

ANDREW M. CUOMO, GOVERNOR

차별은 큰  
고통입니다.

차별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시는 경우,  
전화하십시오.

도와  
드리겠습니다.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WWW.DHR.NY.GOV](http://WWW.DHR.NY.GOV)

ANDREW M. CUOMO, GOVERNOR

# 뉴욕주 인권법(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 과 뉴욕주 인권 분과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1945년, 뉴욕주 의회는 미국 내 최초의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이로써 뉴욕주에는 뉴욕주 내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 완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행동할 책임이 있으며, 그것이 차별로 인한 것이든 또는 편견, 불관용 또는 부적절한 교육, 훈련, 주택 공급 또는 의료 서비스로 인한 것이든 상관 없이, 그러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는 주민들의 권리 및 정당한 특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자유 민주 국가의 제도 및 기반을 위협하고, 뉴욕주 및 그 주민들의 평화, 질서, 건강, 안전 및 전반적 안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인권법(Human Rights Law)"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나이, 신념, 인종, 피부색, 성적 기호, 출신 국가, 혼인 상태, 가정 폭력 피해자 신분, 장애, 군 복무 신분, 체포 기록, 유죄 판결 기록, 유전적 소인, 가족 상태(주택 분야에 한함) 등을 근거로 고용, 주택, 신용 대출, 공공 편의 시설, 의용 소방 활동, 비종파 교육 기관 등에서 차별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인권 분과 ("DHR" 또는 "본 분과")는 차별 행위를 당한 개인에 의한 고발 사건의 조사, 심리 개최 및 해결 등을 통해 뉴욕주 주민들을 위한 중요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소책자는 개인이 위법적 차별 행위에 대해 본 분과에 고발할 때 또는 고발하고자 할 때 관련된 절차, 그리고 해당 절차 진행과정 중 본 분과가 도움을 드릴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 위법적 차별 행위

웹스터 사전은 "차별"을 "대우 상의 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것이 반드시 **위법적** 차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개인의 강점에 근거해 A 대신 B라는 사람을 선택해 채용할 수 있고, 레스토랑은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사람들을 입장시키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행위가 개인의 인종, 성별, 신념 또는 그 외 인권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적 특성 또는 특징에 근거한 것일 경우 이는 위법입니다.** 모든 뉴욕주 주민들은 반드시 이 중요한 법과 이 법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는 위법적 차별 행위에 대해 고발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인권법의 보호 대상 특성/특징

뉴욕주 인권법은 개인의 나이, 신념,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기호, 출신 국가, 혼인 상태, 가정 폭력 피해자 신분, 장애, 군 복무 신분, 체포 기록, 유죄 판결 기록, 유전적 소인 및 가족 상태(주택 부문에 한해 적용) 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총칭해 "보호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또, 본인이 이들 특성 또는 특징 중 하나에 근거한 차별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법적 차별 행위에 대한 충분히 고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 뉴욕주 인권법 적용 범위

아래의 경우 개인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채용할 때
- 직장에서
- 주택의 임대, 판매 또는 제공 시
- 일반 대중을 고객으로 하는  
장소에서(예: 식당, 호텔 또는 병원)
- 신용 대출 및 융자 시
- 특정 교육 기관에서
- 의용 소방 활동 조직
- 보이콧 또는 블랙리스트  
기재를 통해

또, 차별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는  
이유로 사업체, 단체 또는 개인  
(예: 고용주 또는 집주인 등)이  
고발한 사람에 대해 일체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면, 본인에게 생긴 일과  
인권법의 보호 대상인 특성/특징  
사이에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인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대우 받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보호 계층의 일원이기 때문"  
이라는 답이 나올 경우, 정당한  
고발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 차별 행위 고발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는 연방법, 주법, 시법이 있으며, 연방법원 또는 주 법원에 고발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뉴욕주 인권 분과는 법원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인권 분과 직원들은 뉴욕주 인권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부터 심리 단계(심리까지 가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고발절차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DHR(인권 분과) 고발 과정은 4개의 기본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고발, 그리고
2. 고발된 주장사항에 대한 수사.  
그리고, 수사 결과, 위법적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상당한 근거가 발견되는 경우,
3. 행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주재하는 심리 소집, 그리고
4. 심리 결과에 따라 고발 사건 해결.

*참고: 본 분과 소속 변호인 또는 그 외 대리인이 심리 과정 전 단계를 통해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고발

**본 분과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차별 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고발하셔야 합니다.**

본 분과에서 귀하가 서명하고 공증 절차를 거친 고발 양식을 접수하는 날이 공식적인 고발 접수일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과 함께) 본 분과에 고발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분과 홈페이지([www.dhr.state.ny.us](http://www.dhr.state.ny.us))를 방문해 고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한 다음,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서, (우편으로, 또는 직접) 본 분과의 브롱스(Bronx) 사무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브롱스 사무소 주소는 본 소책자 끝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 본 분과 브롱스 사무소 또는 본 분과 다른 지역 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해 직접 고발 양식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책자 끝 부분에 나와 있는 지역 사무소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또는,

— 본 분과 지역 사무소 중 한 곳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연락해 고발 양식을 받고/받거나 그 외 고발 접수 관련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을 "호소자"라고 부르며, 차별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응답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발을 하든, 반드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본인의 차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거나 들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을 밝혀야 합니다.

— 본인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차별 행동 당사자로부터 동등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대우를 받았을 수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밝혀야 합니다.

— 해당 사건 또는 행위의 구체적인 날짜를 밝혀야 합니다.

\*고발 양식을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경우, 영업일로 십(10)일 이내에 배정된 사건 번호가 적힌 접수 확인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해당 서한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우편 발송일로부터 십(10)일 후에 브롱스 사무소로 전화해 고발 양식 접수를 확인하고 배정된 사건 번호를 받도록 하십시오.

# 수사



일단 고발 건이 접수되고 나면,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할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수사는 서신 교환, 전화 대화, 고발된 차별 행위 발생 현장 방문, 사실 심리, 또는 이러한 방법 중 몇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역할은 사건의 사실을 수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수사관은 법적 조언을 제공해 드리거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본 분과는 수사 진행 중에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본 분과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에 기반해 위법적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법적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기각됩니다. 판정이 내려지고 나면, 해당 호소 자는 육십(60) 일 이내에 뉴욕주 대법원에 해당 판정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본 분과에서 호소 자가 위법적 차별 행위의 희생자였거나 희생자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행정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 행정 심리



담당 수사관이, 호소 자가 위법적 차별 행위의 피해자였거나 피해자일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은 행정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행정 심리는 법정 재판과 비슷합니다.

행정 판사가 고발 혐의를 바탕으로 심리를 실시합니다. 이 심리에서는, 양측 당사자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공식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 중 본인을 대변할 변호사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분과에서 호소 자의 입장을 대변 해 줄 변호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원하실 경우, 본인을 대변할 변호사를 직접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해결:

## 커미셔너의 명령



심리가 끝나고 나면,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맡은 행정판사가 해당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즉, 호소자와 응답자 중 어느 쪽이 승리했는지)에 대해 양측 당사자들 및 커미셔너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권장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행정 판사의 권장이라고 부릅니다.

커미셔너는 해당 혐의 내용, 증거 및 담당 행정판사의 권장 명령 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에 최종적인 커미셔너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커미셔너의 명령 상 호소자가 승리한 것으로 결정이 되면, 해당 명령에는 구제책이 명시됩니다.

고용 관련 차별 사건인 경우, 구제책에는 정책 및/또는 관행의 변경, 해당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손실된 밀린 급여(이자 또는 수당 포함) 및/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관련 차별의 경우, 구제책에는 정책 및/또는 관행의 변경, 부동산의

임대(렌탈 또는 리스) 또는 판매, 서비스의 제공,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징벌적 손해 배상 및/또는 민사 벌금 및 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 편의 시설 또는 교육 기관 등에서의 차별 같은 경우, 구제책에는 정책 및/또는 관행의 변경, 편의 시설,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의 이용/참가 및 동등한 대우 및/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및 일체의 기타 손해 배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고(Appeals)

호소자 또는 응답자는 커미셔너의 명령 날짜로부터 육십(60)일 이내에 뉴욕주 대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책임

## 호소자

- 가장 최근에 있었던 차별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발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차별 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본 분과와 법원에 동시에 제출하실 수는 없습니다.)
- 해당 고발 사건이 효율적이고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 받는 정보를 본 분과에 제공하고, 처리 과정 중 본 분과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본 분과에 통지해야 합니다. 본 분과에서 호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차별 행위(들)에 대한 일체의 증인들의 날짜,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기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일기 또는 일지를 작성해 둘 경우 수사에 매우 유용합니다.

## 응답자

- 고발 양식에 열거된 각 혐의에 대해 일일이 응답해야 합니다.
- 수사 과정, 그리고 심리가 개최되는 경우 심리 과정 중에 본 분과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 호소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주소 및/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그리고 사업체의 경우,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본 분과에 통지해야 합니다.

# 인권 분과 및 연방 차별 금지법

당신의 고소 내용에 뉴욕주 인권법과 아래 연방법(들)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 분과에 시의 적절하게 고발을 하면 고용 또는 주택분야의 경우 주 차원 및 연방 차원 주장(들)이 모두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차후에 법원을 통해 고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 **1964년 민권법 제 7편 (Title VII of the Rights Act of 1964)**

제 7편은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국가 및 신조를 근거로 한 고용 측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 **고용 시 나이 차별법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고용 시 나이 차별법은 사십 (40) 세 이상인 직원들에 대해 나이를 근거로 고용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연방법입니다.

## **장애 미국인법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장애 미국인법은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연방법입니다.

## **연방 공정 주택법 제 8편 (Title VIII of the Federal Fair Housing Act)**

제 8편은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국가, 신념 및 가족 상태를 근거로 한 주택 측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 흔히 묻는 질문

**제가 차별을 받은 것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누구에게 물어 봐야 할까요?**

본인의 상황 또는 고발 제출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본 소책자 및 본 분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dhr.state.ny.us](http://www.dhr.state.ny.us)입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경우, 본 분과 브롱스 사무소 또는 다른 지역 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연락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기꺼이 문의에 응해 드릴 것입니다. 직원들은 법적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없으며, 문의하는 것은 고발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고발 양식은 본 소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서면으로 작성해 공증 처리를 거쳐야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분과에 고발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법원 제도의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들이 고발하거나 심리 과정에 참여하는 데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분과로서는 뉴욕주 주민(뉴욕어)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분과의 직원이 무료로 심리 과정 전체에 걸쳐 호소자를 도와 드리게 됩니다.

**고발 양식은 왜 꼭 1년 안에 제출해야 하나요?**

호소자가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낄 때 즉각 행동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 인권법에서는 본 분과에 고발 양식을 제출하는 데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주법원에 고발 양식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고용주들은 누구나 인권법의 적용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이 최소 4명 이상인 고용주에 한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모두 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장애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하나요?**

장애가 있어서 담당 업무의 필수적 부분을 상식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편의가 필요한 경우, 그것이 특정 상황에서 타당하고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료 기록 문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문서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게 장애가 있는 경우, 집주인은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하나요?**

장애가 있어서 거주 주택에 상식적으로 타당한 개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 제공자는 그러한 개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귀하 본인이 해당 개조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임대(렌트)인 경우, 나갈 때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주택 제공자는 반드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해당 시설을 사용 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 정책, 관행 및 서비스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타당한 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고발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체의 위법적 차별 행위에 대해 고발 양식을 제출하거나, 인권법에 의거한 일체의 법적 절차 중 증언하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한 보복적 행위를 당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본 분과에 연락해 그러한 행동이 별도의 차별 행위 고소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신용 대출 차별이란 무엇인가요?**

신용과 관련한 차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소책자 시작 부분에 열거한 여러 특징 또는 특성 중 하나를 근거로 신용 대출을 거부한다거나, 이러한 특징 또는 특성 중 하나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거나 하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행위는 미묘해서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 행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분은 본 분과에 연락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방 기관과 본 분과에 동시에 고발을 접수할 수 있나요?**

(EEOC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미국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은 고용 분야에서 연방 차별 금지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HUD라고 부르는) 미국 주택-도시 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주택과 관련한 연방 차별 금지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분과는 뉴욕주 인권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 법은 뉴욕주에 한해 적용되며, 고용 및 주택 범위를 넘어서 공공 편의 시설, 대출 및 교육 분야까지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 및 주택 분야에서 연방법과 뉴욕주 인권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의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고용 차별 및/또는 주택 차별 행위 중 일부의 경우 연방법과 주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본 분과에만 고발 양식을 제출하셔도 모든 권리를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권 분과 사무소

## (Division of Human Rights Offices)

### 지역 사무소

#### 올버니(Albany)

Empire State Plaza  
Corning Tower  
28<sup>TH</sup> Floor  
P.O. Box 2049  
Albany, NY 12220  
전화: 518/474-2705

#### 빙햄튼(Binghamton)

44 Hawley Street  
Room 603  
Binghamton, NY 13901  
전화: 607/721-8467

#### 브루클린(Brooklyn)

55 Hanson Place,  
Room 304  
Brooklyn, NY 11217  
전화: 718/722-2856

#### 버팔로(Buffalo)

State Office Building  
65 Court Street  
Suite 506  
Buffalo, NY 14202  
전화: 716/847-7632

#### 롱아일랜드 - 나소

**(Long Island - Nassau)**  
175 Fulton Avenue  
Suite 404  
Hempstead, NY 11550  
전화: 516/538-1360

#### 롱아일랜드 - 서포크

**(Long Island - Suffolk)**  
State Office Building  
Suite 2B49  
Hauppauge, NY 11787  
전화: 631/952-6434

#### 맨하탄 - 로워(Manhattan - Lower)

20 Exchange Place  
Second Floor  
New York, NY 10005  
전화: 212/480-2522

#### 맨하탄 - 어퍼(Manhattan - Upper)

State Office Building  
163 West 125<sup>TH</sup> Street  
Fourth Floor  
New York, NY 10027  
전화: 212/961-8650

#### 픽스킬(Peekskill)

8 John Walsh Blvd.  
Suite 204  
Peekskill, NY 10566  
전화: 914/788-8050

#### 로체스터(Rochester)

One Monroe Square  
259 Monroe Avenue  
Suite 308  
Rochester, NY 14607  
전화: 585/238-8250

#### 시라큐즈(Syracuse)

333 East Washington Street  
Room 543  
Syracuse, NY 13202  
전화: 315/428-4633

## 본부(HEADQUARTERS)

### 더 브롱스(The Bronx)

One Fordham Plaza  
Fourth Floor  
Bronx, NY 10458

### 사무소 전화번호

718/741-8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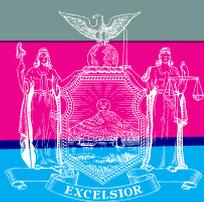
### 수신자 부담 전화 (고소 관련 정보)

888/392-3644

### 홈페이지

[www.dhr.state.ny.us](http://www.dhr.state.ny.us)





뉴욕주 인권법 (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기호  
신분, 체포 기록, 유죄 판결 기록  
고용, 주거, 신용, 공공 편의 시설  
기관과 관련해 차별하는 것을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WWW.DHR.STATE.NY.US](http://WWW.DHR.STATE.NY.US)

ANDREW M. CUOMO, GOVERNOR  
GALEN D. KIRKLAND, COMMISSIONER

ONE FORDHAM PLAZA  
BRONX, NEW YORK 10458  
(718) 741-8400